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득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 말소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



1. 공 고 명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1. ~ 2023. 12. 5.(14일간)

3. 처분원인 :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사실 확인

4. 처분내용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 말소

5. 법적근거

가.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2항(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6. 대 상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직권말소 대상 배출시설	공시송달 사유
방약수내과의원	방익○	서울시 종로구 종로 344 (송인동,종로대우빌딩 302호)	기타수질오염원	폐업 등 우편송달 불가
하이수리방	김성○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6가길 20 (봉익동,(2층))		
카리스	조민○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길 12 (낙원동,파고다빌딩 503호)		
라온공방	박정○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6가길 33, 세진빌딩 501호 (묘동)		
나르샤	신동○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31, 2층 (익선동)		
G-7	이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1, 304호 (종로3가)		
(주)로시몽	조윤○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길 12, 파고다빌딩 304호 (낙원동)		

7.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종로구청 환경과(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6층)

(담당자 : 김남희, ☎ 02-2148-2475, fax 02-2148-5826)

나.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제출

다. 제출기한 : 2023. 12. 5.(화) 18:00

8. 기 타

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위와 같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직권말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